

#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의안 번호	2013~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3. 05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1. 요구이유

포장박스 제조장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, 보다 효율적이고,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(하부기관 포함)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 설 명 :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

나.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

다. 규 모 : 부지 6,612㎡ / 공장 1,200㎡

라. 사업내용 : 농산물 포장박스 제조업

마. 위탁대상 사무

○ 시설 :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

○ 운영 :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,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,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바.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부터 3년

○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

사. 수탁자격

○ 거창군 관내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(그 하부기관 포함)

아.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

자. 소요예산

○ 시설운영비 지원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-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지원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

- 근로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른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일감확보, 판로 개척 및 공장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

#### 나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제2항, 제4항
-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- 「거창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제5조(운영)

#### 다. 향후계획

- 2013. 5월 중순 : 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축물준공 및 공장등록
- 2013. 5월 중순 : 「거창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정
- 2013. 6월 초순 : 수탁자 모집 공고
- 2013. 6월 초순 :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
- 2013. 6월 중순 : 수탁자 접수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
- 2013. 6월 중순 :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위·수탁 계약 체결
- 2013. 6월 하순 :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소

#### 라. 예산조치

- 2014년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반영계획
-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 및 장비 보강은 국비, 복권기금 지원 가능함

마. 위탁운영 계획 : 따로붙임

#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운영 계획

포장박스제조공장인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조기정착을 꾀하고, 장애인의 근로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

## □ 위탁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제2항, 제4항
-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- 「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제5조(운영)

## □ 시설현황

-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
- 규 모 : 부지 6,612m<sup>3</sup> / 공장 1,200m<sup>3</sup>
- 사업내용 : 포장박스제조업(펄프가공)
- 고용규모 : 37명(장애인 30명)
- 사 업 비 : 2,549백만원(군비 1,189, 민간자본 1,360)
- 소 유 자 : 거창군

## □ 위탁사무

- 「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제4조(업무 및 기능)
  -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
  -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
  -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
  -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의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□ 위탁기간 : 위탁계약체결일부터 3년간

## □ 수탁자격

- 「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제5조(운영)
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(그 하부기관 포함)
- ※ 장애인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

## □ 수탁자 선정

- 「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제6조(수탁자 선정)
- 수탁자 : 공개모집
-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

## □ 수탁자선정위원회

- 구성인원 : 위원장 포함 7명
  -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선정위원회)
  - 6인 ~ 9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위 원 장 : 부군수
- 위 원 : 6명
  - 군 의 원 : 1명(군의회 추천)
  - 관계 공무원 : 2명(주민생활지원실장, 재무과장)
  -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: 1명(여성)
  - 회계·법률관계자 : 1명(법률자문 변호사)
  - 주민공익단체 : 1명(여성)
- ※ 간 사 : 복지정책담당주사

- 선정위원 임명 및 위촉 : 군수
  - 신청자와 특수관계(이사, 감사, 대표와 관련)에 있는 자는 제척
    - ※ 위촉위원은 심사당일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각서 제출 의무화
- 운영기간 : 위촉 시부터 수탁법인 선정 시까지 비상설기구로 운영
  - 수탁법인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
- 심의의결 :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
  -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  - 수탁법인 선정기준, 배점 심의 결정
  - 수탁 응모법인 제출서류 검토 심사 및 평가
  - 수탁법인 선정

## □ 향후추진계획

- 2013. 5월 중순 : 「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정
- 2013. 6월 초순 : 수탁자 모집 공고
- 2013. 6월 초순 :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
- 2013. 6월 중순 : 수탁자 접수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
- 2013. 6월 중순 :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·수탁 계약 체결
- 2013. 6월 하순 :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소